

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

(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)

장 비	인 력
1. 제70조 관련 :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, 배출가스 측정 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. 제124조의3제1항 관련 :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,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 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	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·운영할 수 있는 기계, 화공 또는 자동차검사분야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 이상

- 비고: 1. 장비사용에 대한 계약에 따라 엔진공급사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동차제작자는 위 표에 따른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